

## GS칼텍스 협력사 행동규범

### 서문

GS칼텍스는 1994년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윤리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2001년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CEO의 자율준수 경영방침 아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관련 보고 체계를 갖추어 전사적 차원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EU에서 시행 중인 CSR 공개 의무법안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GS칼텍스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을 제정하였으며, 이행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는 해당 규범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하위 협력사에도 이의 준수를 요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1. 근로자의 인권 존중

1.1 강제근로 금지 : 협력사는 법적요건을 준수하여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공식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모든 근로는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근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의지를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하여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퇴사하도록 하거나, 질병, 일시적 장애 등의 경우에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미성년 근로자 보호 : 협력사는 만 15세(또는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직원들이 고용되어 있다면 이들을 위험한 작업 또는 연장 및 야간 근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1.3 근로시간 준수 : 협력사 임직원은 법에서 정한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7일마다 최소 1일 휴일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밖에 최대 근무시간 및 최대 잔업가능 시간을 관련 법규정에 부합되도록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법적 요건에 따라 휴식, 주중 휴무일, 휴가신청, 유/무급 휴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 협력사는 관련 법령이 정한 최저 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급여, 잔업수당, 직원복지, 급여 공제를 포함한 보상제도를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준수해야 한다. 징계 수단으로 기본급을 감할 수 없다.

1.5 인도적 대우 :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언어/육체/정신적 폭력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1.6 차별 금지 : 협력사는 근로자가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국적, 출생지, 종교, 장애, 결혼/임신 여부, 노조가입 또는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 존중 : 협력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등에 대한 걱정 없이 협력사의 경영진과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불만 조정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 2. 안전한 작업환경

2.1 산업 안전 : 협력사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한 후,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통제하기 위해 공정 설계, 기술/행정적 통제, 예방 정비, 안전한 작업절차 구축 및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2.2 비상사태 대비 : 협력사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정의하고 사태 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관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4 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 협력사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고온, 방사선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2.5 육체적 과중 업무 관리 : 협력사는 근로자가 장시간의 반복적 수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체력소모가 과다한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 또는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6 설비안전 : 협력사는 작업장 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 특성에 따라 안전작업절차 및 지침을 규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관련 절차서 또는 지침서를 개정하고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7 기숙사 및 위생시설 제공 : 협력사는 작업장, 위생 관련 장소, 주거 시설 등 근로자의 소재와 관련된 모든 장소와 시설을 보건안전 리스크 및 오염 리스크가 없도록 제공해야 한다.

2.8 안전보건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 협력사는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운영 기준을 비롯한 안전 관련 정보는 근로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3.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3.1 환경 법규 준수 : 협력사는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요건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GS칼텍스**의 환경,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2 오염예방과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 : 협력사는 생산 프로세스 개선, 설비 공정의 변경, 원료 대체, 자재 재활용/재사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등을 통해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

3.3 화학물질 관리 : 협력사는 사업장 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취급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기반한 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폐기물과 폐수 관리 : 협력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 후 배출/폐기해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5 대기오염 관리 : 협력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과 공정에서 발생된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한다.

3.6 제품 및 공정 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 협력사는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4. 기업 윤리 준수

4.1 윤리경영 준수와 부당이익 금지 : 협력사는 **GS칼텍스**의 윤리경영 방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금지하고 반부패 법규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4.2 정보 공개 : 협력사는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 및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4.3 지식재산권 보호 : 협력사는 모든 지적 재산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 이전 시 해당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GS칼텍스**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4.4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 협력사는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5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 협력사는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비밀과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

4.6 개인정보 보호 : 협력사는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5. 경영시스템

5.1 경영진의 준수인지 표명 :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경영진의 준수인지 및 지속적인 개선의지를 문서로 표현하여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경영진은 행동규범의 준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5.2 외부 요구사항 대응 : 협력사는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최신 법령/규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준수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5.3 위험 평가와 관리 : 협력사는 본 규범이 담고 있는 인권, 산업안전, 환경 및 기업 윤리 측면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영향도가 큰 위험에 대해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4 목표 수립과 관리 : 협력사는 인권, 산업안전, 환경 및 기업윤리 측면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5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 협력사는 본 규범과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해 근로자, 협력사 및 고객과 소통해야 한다.

5.6 임직원 의견수렴과 개선 :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청취하여

행동규범의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5.7 문서와 기록 : 협력사는 문서와 기록의 작성, 유지에 있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5.8 협력사의 책임 :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본 규범을 통해 **GS칼텍스**가 지향하고 있는 윤리/환경/사회적 기업경영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5.9 지속가능한 구매 :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와의 구매 거래시 지속가능한 구매를 위한 윤리/환경/사회적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1월 29일 개정)